

서울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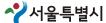
www.seoul.go.kr 제 3322호 2015. 11. 26.(목)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5-2076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5-209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5-2102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5-21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 □ 시
제2015-369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9
제2015-3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10
제2015-371호 도시관리계획 [노원구 2개구역 [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 결정
(변경) 고시
제2015-372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19 제2015-373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25
제2015-37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40
제2015-376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수립 고시
제2015-378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47
◈ 공 고
제2015-2067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제2015-206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
제2015-208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변경공고51
제2015-20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51
제2015-209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53
제2015-209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55
제2015-210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56
◆ 구 고 시
제2015-1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57

제2015-15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용산구)60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서대문구)61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145호	(마포구)
◈ 사업소공]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80
[♠] 기 타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송파소방서)85
제2015-305호 제2015-30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76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안」제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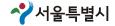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미준수 사항 수정
-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 02)2133-0821, E-mail: lyh122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9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



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수도 요금으로 인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세대 주택 과의 급수공급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

- 2. 주요내용
 -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함(안 4조1항 관련 별표 1)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전화: 3146-1475, E-mail: big4sun@seoul.go.kr, Fax: 3146-1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02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현재 건립중인 서울시립과학관의 적시 개관('17. 2월 예정)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과 서울시의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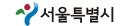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과학관의 휴관일 지정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1월 1일(안 제4조)
- 나. 관람료 부과(안 제5조, 별표)
 - 어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 단체(20인 이상)는 50% 할인
- 다. 관람료 면제 대상 규정(안 제6조)
-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라. 일부시설(강당, 세미나실 등)의 대관 가능 및 대관자 준수사항(안 제10조, 제13조)마. 판매시설(식당, 편의점 등)의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가능 등(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 2133-5245, FAX: 2133-0703, E-mail: kgy01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2	구 분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0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 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과장 이해우, 담당 김가영(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과장 이해우, 담당 김가영(02-2133-5245)							
4. 근거법령명 등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해당없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제10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항: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과학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시기획실, 교육실, 강당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대관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제3자에게 대관의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함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관 가능 시설과 대관자 준수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필요한 시민들이 대관하도록 실행 가능함
-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동 규제로 인한 소요비용은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 과학관 시설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동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2항의 내용은 시설이 필요한 시민에게 직접 대관의 허가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이 명료하며,
 - 보다 구체적인 대관 절차, 비용 등은 추후 규칙, 대관규정 등으로 구체화 할 예정임
-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 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강 아라호 이용요금 조정 등 기본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한강공원내 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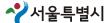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한강 아라호 이용료를 이용시간에 따라 정박대여는 1,200천원 ~1,900천원, 운항대여는 2,200천원~3,500천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1)
- 나.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표 중 공휴일 사용료 미징수 내용을 삭제함 (안 별표 1) 다. 한강르네상스호·한강아라호 대여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 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전화: 02)3780-0752, FAX:02)3780-0740, E-mail : wind99kr@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69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9-470호(1979.11.1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53호(2004.5.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60호(2015. 9. 3.)로 변경결정된 수도공급설비 및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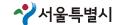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폐쇄된 김포가압장 부지에 아동청소년 예술문화교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공급시설 및 공원 경계를 현장 측량결과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임.
-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변경결정 조서

7 8	시서며	시설이 베 티	위 치		면 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T A	기정	변경	변경후	의소설경설	비포	
변경	수도 공급설비	김포가압장	양천구 신월동 269 일대	145,924	-	145,924	서울시고시 제1979-470호 (1979.11.17)	경계선 조정	
변경	공원	문화공원 (서서울호수)	양천구 신월동 267-1 일대	217,946	-	217,946	서울시고시 제2004-153호 (2004.5.31)	경계선 조정	

나. 변경 사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수도 공급설비	김포가압장	경계선 조정	- 현장측량과 수치지형도(연속지적도)간 오차정정
변경	공원	문화공원 (서서울 호수)	경계선 조정	- 현장측량과 수치지형도(연속지적도)간 오차정정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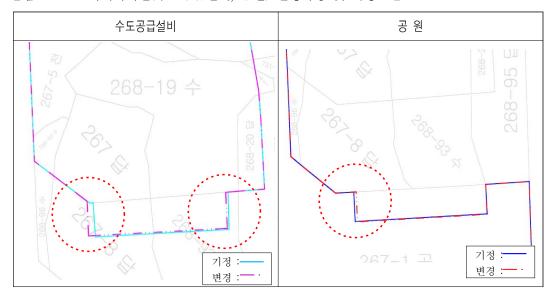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07),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12)에 관계도서를 비 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0호(2014.6.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8호(2015.5.2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6호(2015.9.17.)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시 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토지 지번 이동에 따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62-1외 11필지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칭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
-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1) 도로개설 : 폭 12.2m ~ 25.3m, 연장 157m 폭 4.0m, 연장 31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명: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무교동)
- 마. 사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7. 5. 19일 까지 (변경없음)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 자의 주소 및 성명: 붙임 (토지 지번 변경)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변경없음)
- 아. 관련서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133-807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8666)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4)

		1 ਵ	7												보상제외구간 (Up-Ramp 기보상)
			권리관계												
		판계인	삼						면정없음						변경없음
			성명												
			기분												
토지조서	(7	소유자	삼						변경없음						변경없음
뻐	남북간 연결도로)		성명												
	건설공사(시흥3동 1	년 일 면 작	("III")	128.3	10.5	39.6	221.8	633.1	28.2	259.6	421.1	849.9	41.6	115.9	92.6
	건설공사	ম্	(m,	576.3	177.7	576.2	574.2	3,009.4	259.3	677.8	677.8	2,294.9	222.7	1,330.6	467.5
	4공구	7	√	舌	舌	吞	亏	버	舌	舌	舌	귬	ক	五	五
	} 고속도로	#J	변경	962-19	962-17	962-20	962-16	1001-65	961-11	963-33	963-35	963-30	1001-68	962-18	963-37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 업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지번	기정	962-8	962-5	962-9	962-1	1001-32	961-6	963-20	963-21	963	1001-48	962-6	963-22
	행자 : 서명 명 : 강	Ti U	lo Io	~ 왕 왕	수	는 하 아	사 하 자	수속	는 하 라	는 하 하	수	<u> </u>	<u> </u>	~ 항 바 바	장
	사업시호 사 업	의 판	판	1	63	8	4	2	9	7	∞	6	10	11	12

물건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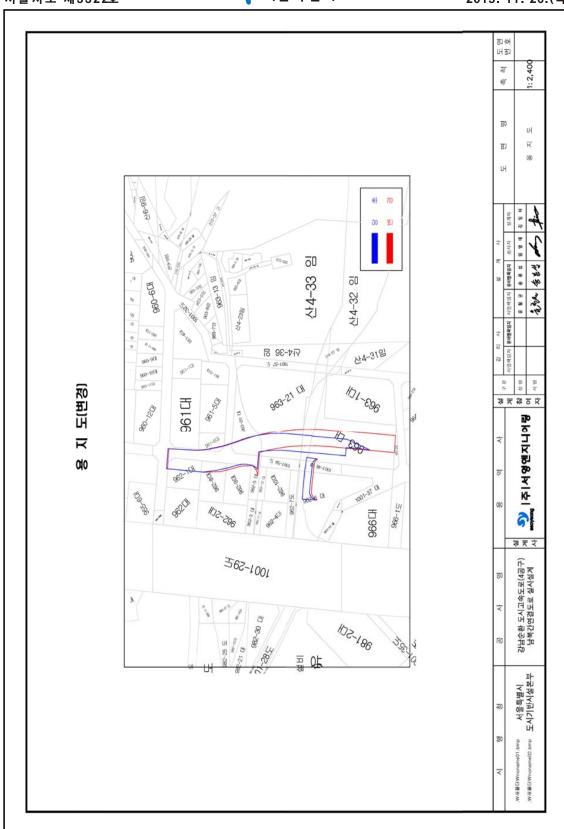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 업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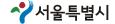
	면									
	수	원 등								
문과	Ä	는 (
	7 2	‱ 30								
소유자	М	₹.	경기도 교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5번길 21, 1401동 102호(대화동, 성저마음)	경기도 교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5번길 21, 1401동 102호(대화동, 성저마을)	강남구 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1동 501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10-7(시흥동),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2길 72, 세동 302호 (시흥동, 영일빌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4-25			
	1	£0 ₹0	유	하	수육(0	상문학 공문회계(의 교회 (박문학)	나복개 외 227인	나복개 외 224인	나복채 외 224인	나복채 외 224인
	면적(매)		67.9	61.5	72.2	24.1	144.1	876.3	53.5	117.9
	구조 및 종류		철근본크리트	조립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절근콘크리트 /강구조	철근본크리트 /강구조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물건의 종류		상가	상가	상가	ভ	판매시설 /가건물	판매시설 /가건물	판매시설 /가건물	판매시설 /가건물
	иo	뜐	시총동 962-16	시총동 962-16	시총동 962-19	시총동 961-11	시흥동 963-33	시흥동 963-30	시흥동 1001-68	시총동 962-18
수재지	ndo.	73	시흥동 962-1	시흥동 962-1	시흥동 962-8	시흥동 961-6	시흥동 963-20	시흥동 963	시흥동 1001-48	시흥동 962-6
	п-		다	다	中家	山 公 小	다	다 상 나	山 小	다
	を完め		1	23	65	4	S	9	7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 업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_												
	드											
म्भा	지신											
	严罗											
<u>አ</u> ይብ	지지지		17,458/922.48	17,458/70.96		17,458/922.48	17,458/70.96	17,458/922,48	17,458/70.96		17,458/922.48	17,458/70.96
`	성명	사용시	서울시	재정경제부	서울시	사울시	재정경제부	서울시	凇정경제부	급천구	서울시	凇정경제부
	실제이용상황	늄	75		라, 다	吞		吞		Щ	舌	
	면입면전 (m') 보	10.5	115.9		421.1	92.6		849.9		633.1	41.6	
	(国 (国 (国 (国 (国 (国 ()	177.7	1,330.6		3,056.6	467.5		2,294.9		3,009.4	222.7	
	전	굼	舌		季	吞		舌		버	舌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TE CE	962-17	962-18		963-35	963-37		963-30		1001-65	1001-68	
1 R	78°	962-5	962-6		963-21	963-22		963		1001-32	1001-48	
· [의 된 성	-	2		က	4		5		9	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1호

도시관리계획 [노원구 2개구역 [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2개 구역(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월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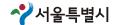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운영)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이내 증축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원구 2개 구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임.
-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민간부문 시행지침 변경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 구역

	연번	관할구	구역명	위치		면 적 (m²)		계획결정일	
ì	인간 전설포		T48	귀 시	기정	변경	변경후	에 작물성물 	
	1	노원구	상계1 · 2단계 택지개발지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	2,663,453	-	2,663,453	2008.11.20. (서고시 제2008-411호)	
	2	노원구	월계1지구	월계동 845번지 일대	77,094	-	77,094	2002. 7. 2. (서고시 제2002-264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③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 결정(변경)



■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정

제4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 전·용도변경, 개·보수(리모델링)시 본 지 구단위계획 및 <u>운영</u>지침의 적용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u>지침</u> 중 건축물 형태 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토록한다.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후 1회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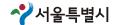
-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개·보수(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用る

- 제4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 지침의 적용)
-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 전·용도변경, <u>리모델링</u>의 경우 본 지구 단위계획 및 <u>시행</u>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u>및 시행지침</u> 중 건축 물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 다.
- 2.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있다.

-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 한다.
-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 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 건축공동원회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 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월계1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운영지침 결정(변경)

기정

제 3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u>지</u> 침의 적용)

-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 선, 이전, 용도변경 및 <u>개/보수(리모델링)</u> 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 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 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 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 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횟수 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회에 한함)

-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 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 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 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 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 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야 한다.
-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 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u>개/보수(리모델링)</u>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u>구</u>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변경

- 제3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 획 및 운영 지침의 적용)
-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 선·이전·용도변경 및 <u>리모델링</u>의 경 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 한다.
-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

 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 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야 한다.
-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u>개·보수(리모델링)</u>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u>도</u>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2.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운영)지침 : 변경없음
- Ⅲ.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7) 에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4차) 슛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및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4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나. 규모

○ 연장 6.1km, 역사 4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연장 1.3km, 역사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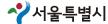
가. 종 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 3, 4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변경)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변경)

- 2,3,4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 ~ 신장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조서(변경)

1) 1공구(변경)

가) 교통시설

(1) 본 선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m²)	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5호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서울시계	-	1,099	10,360	2015. 08.03.	〈공원,녹지〉 녹지 (136㎡) 제1호 근린공원 (198㎡), 제2호 근린공원 (2㎡), 공공공지 (153㎡) 중복결정 〈하천〉 고덕천 (385㎡) 중복결정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5호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서울시계	-	1,099	11,265		《공원,녹지》 녹지 (84㎡) 제1호 근린공원 (219㎡), 공공공지 (173㎡) 중복결정 《하천》 고덕천 (431㎡) 중복결정

	T				0 =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위 치 종 점	주 요 경과지	연장 (m)	면적 (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입출고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	1,365	6,883	2015. 08.03.	〈공원〉 근린공원2 (232㎡), 제1호 근린공원 (3,635㎡) 중복결정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입출고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	1,365	8,248		〈공원〉 근린공원2 (266㎡), 제1호 근린공원 (4,865㎡)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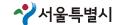
[※] 상기 면적은 정거장 면적 제외 및 본선 환기구 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2) 정 거 장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m²)	의 조 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H1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	427	6,993	2015. 08.03.	〈공원,녹지〉 강일3 (539㎡), 녹지 (340㎡), 근린공원 (439㎡), 제1호 근린공원 (502㎡), 제2호 근린공원 (1,032㎡) 중복결정
변경	3	철도	도시철도 (H1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	427	8,864		〈공원,녹지〉 강일3 (677㎡), 녹지 (350㎡), 근린공원 (810㎡), 제1호 근린공원 (771㎡), 제2호 근린공원 (1,250㎡) 중복결정

[※] 상기 면적은 정거장의 환기구 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2) 2, 3, 4공구(변경없음) : 생략



- 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변경사유서
 - 1) 1공구(변경)

가) 교통시설

(1) 본 선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철 도 (도시철도 5호선)	·위치(변경없음) - 기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 종점: 서울시계 ·연장: 1,099m(변경없음) ·면적: 10,360㎡ → 11,265㎡ (증 905㎡)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변경(사업계획 승인면적은 변경이 없으 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선을 [지하 시설물 폭 + 0.5m(양측)]으로 정정 결정)
2	철 도 (도시철도 입출고선)	·위치(변경없음)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변경(사업계획 승인면적은 변경이 없으 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선을 [지하 시설물 폭 + 0.5m(양측)]으로 정정 결정)

(2) 정거장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	철 도 (H1정거장)	·위치(변경없음) - 기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연장 : 427m(변경없음) ·면적 : 6,993m² → 8,864m² (증 1,871m²)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H1정거장) 변경(사업계획 승인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 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 선을 [지하시설물 폭 + 0.5m(양측)]으로 정정 결정)

- 2) 2. 3, 4공구(변경없음) : 생략
-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게재 생략
- 마.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 게재생략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관계 인 주소·성명
 - 가. 편입용지(수용 용지)
 - 1공구(변경없음): 게재생략



2공구(변경없음): 게재생략3공구(변경없음): 게재생략

○ 4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편입용지(지하사용 용지)

○ 1공구(변경없음): 게재생략

ㅇ 2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 3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4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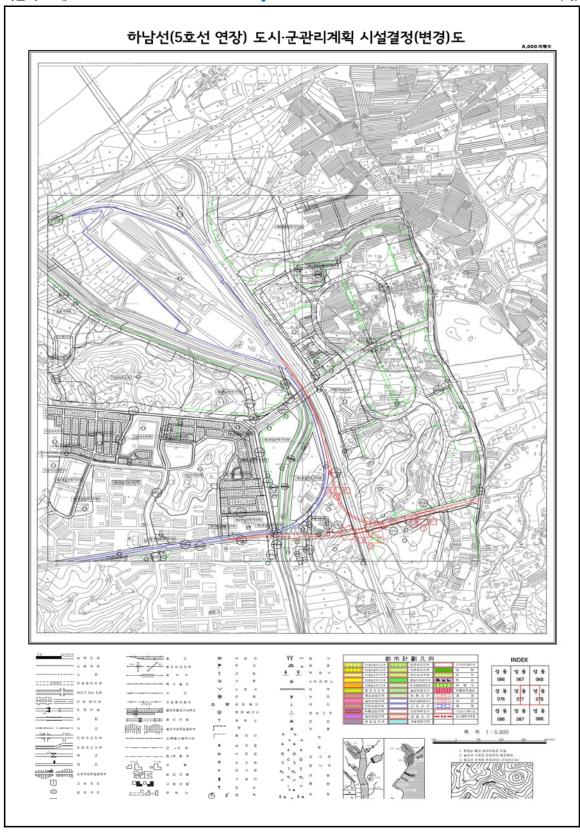
다. 편입용지(일시사용 용지)

○ 1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2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3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 4공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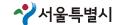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슛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2015.9.24.)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 나. 연 장(변경없음)
 - 13.753km
 - 다. 면 적
 - 당 초 : 285,386.58m²
 - 변 경 : 285,189.28m²(감197.3m²)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5. 5.31.
 - 나.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2009.12.31. ~ 2015.12.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 인 주소·성명: 별항1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철도) 변경결정 사항
 - 가. 결정취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 나.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 조서(결정도면: 별항2)



○ 본선

7.11	UMB	시설의			위치	규모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²)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 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 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562.0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 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 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471.8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08.11.20	감)90.2㎡ ○ 환기구 축소 설계변경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뺀 부분임.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m²)		최초	비고
十正	시달당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기정	철도	도시철도 (926정거장)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6,763	-	6,76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27정거장)	강남구 역삼동 802-1번지 일대	2,303	-	2,30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28정거장)	강남구 삼성동 111-147번지 일대	6,965	_	6,965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29정거장)	강남구 삼성동 172번지 일대	8,783	-	8,78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0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123번지 일대	7,850.9	_	7,850.9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1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289번지 일대	8,237	_	8,237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2정거장)	송파구 삼전동 157번지 일대	6,002	_	6,002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3정거장)	송파구 석천동 209번지 일대	9,536.4	-	9,536.4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4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95번지 일대	7,986	-	7,986	서울시고시 415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935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17번지 일대	8,783.4	감)139.2	8,644.2	서울시고시 415 ('08.11.20)	○ 환기구 축소 설계변경 ○ 소마미술관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6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일대	6,884.8	-	6,884.8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7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227-7번지 일대	7,122	-	7,122	국토부고시 758 ('10.11.04)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8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8-1번지 일대	7,608	_	7,608	국토부고시 758 ('10.11.04)	
		계		94,824.5	감)139.2	94,685.3		

7.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32, 7134)

나.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토지조서 (수용)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내용	935정거장 시 서울특별시 출입구#1 이브 E/W	935정거장 시 서울특별시 출입구#4 환기구1,2	시 서울특별시 \$935정거장 출입구#3	시 서울특별시 935정거장 외부 EN	내 이는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성동구	시점 사건 사건 사건 사건 사건 사건 수 있다.	시 서울특별시 N8=-21분할 935정거장 자전거주차장	시 서울특별시 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	시 서울특별시 공용-2번지에서 문할 정거장 출입구	시 서울특별시 용어장 출입구
	자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피	152.0	118.0	110.0	22.0	486.0 조각	364.0 전시장	62.4 62.4	86.1	251.3	54.7
7	田	포	14,565.3	1,787.1	3,671.7	39,408.6	0	82,238.4	62.4	86.1	251.3	54.7
)21공구 작구	Ī	<u>₩</u> Г	버	버	버	버	ī	5	품	舌	품	舌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u>≺</u> ₽1	방이동94-3	방이동 4	방이동 11	방이동 88-17	д 2	60 중 88-2	방이동 88-24	방이동 88-25	방이동 88-26	방이동 88-27
광구명: 2 소계지: A	I	i i i i	사 전	사 전	다. 전 전 전	다. 전 전 전	쩏	型 公	다. 면경 요	자 판	자 포기 서 જ	자 포기 서 또
0 6 7 7	5	27 27	-	2	က	4		ဂ	. 9		ω	O

시그	2 세3	3322호						2	015.	11. 2
			1	1			1			
	i ∃	88-2번지에서 분할 정거장 환기구	88-2번지에서 분할 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	88-2대분할 외부출입구	936정거장 외부출입구 환기구3EA 자전거주차장 피난계단 대체출입구 외부EV	936정거장 외부EV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									
이해관계인	κ⊢									
)	조0 표0									
소유자	K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Ϋ́	품0 목0	マ	マ	₹	₹	국				
제 0	는 <u>수</u> 0	~ 소	~ 선	·松 Ol L	대 개	버				
고	띠	32.3 32.3	76.4 76.4	269.7	578.3 578.3	14.4				2,313.6
田	포	32.3	76.4	269.7	8,762.3	58,895.0				210,181.3
<u>-</u>	<u> </u>	퓹	풉	굼	FIO	Ы				
	₹	방이동 88-28	방이동 88-29	방이동 88-23	방이동 89-27	방이동 89-28		:	;	
I	는 누	사 전 30	다 합 서 전	다. 전 교	다 표기 '서 또'	다 전 전 전				다 3
£	27 27	10	=	12	13	41				함

토지조서 (지하사용)		이외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 >=	소 성명 주 소 면디의 8뉴 검도 커명한해주면기관 미고 1 시 시 에		(6.42) 8.62 ~ -6.48 정거장	6.34 ~6.58 8.62 ~ -6.54 정거장 (6.46)	(6.56) 8.74 ~ -6.42 정거장	2.46~9.41 13.68 ~ -6.34 935정거장 (5.83) 156.34) 본체	15.		88 시호극을서 시호적 3.22~10.15 6.84 ~ 1.01 환기구#4 원당 (9.68)	9.12~9.18 7.33 ~ 1.67 935S1 (9.15)	7.66~9.18 8.79 ~ 1.67 935E1 (8.42)	4.09~8.47 8.57 ~ -11.42 월드터널	7.56 ~12.90 8.66 ~ -11.10 255日日 NATM
토지조서	도 존속시까지		を る 品 K ト	도 시 서울특별시	도 시 서울특별시	도 시 서울특별시	도 시 서울특별시				^{극과} 기념국민체 방이동 8 전시장 육진흥공단				천 구 송파구
	21공구 ¹ 4구 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저 전	지적 편입 상	1,787.1 1,033.0	14,565.3 940.0 940.0	3,617.7 397.0 397.0	39,408.6 1,673.0 1,673.0		7,206.6		82,258.4	7	, 'S', '		134,174.8 1,134.2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3		방이동 4 도 1	방이동 94-3	방이동 11 도 3	방이동 88-17 도 3			LI C	88-21 H 8				방이동 천 13 88-6
	공구명: : : 소재지: : / 사용기간:	I r		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 成 成 级 数	4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ᅜ		2	7 E	77 00		6 전 전 선 전 전 전

	디	설 디 더 더 더 너	설 디 면 드	936 정거장	NATM	936 정거장	교	936 정거장	<u>고</u> 고미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9.14 ~ -10.98	10.74 ~ -10.45	2.58~11.68 16.02 ~ -12.63 (4.46) 지열공(-162.63)	8.35 ~ -11.32	16.02 ~ -12.63	10.73 ~ -11.09	15.75 ~ -5.79	8.01 ~ -11.25	
	전 대 (E)	7.64 ~19.24 (16.27)	6.61~17.55 (10.84)	2.58~11.68 (4.46)	5.09~5.88 (5.55)	2.58~11.68 (4.46)	8.47~23.55 (17.11)	3.31~5.29 (4.63)	8.47 ~17.38 (12.24)	
소유권이외	다 Kio 글K 그 iii 글 얼									
1 관 계 인	K⊢									
0	동0 동0									
야 각	ĸ⊢	선 선		방이동 88		Т Ш О	시호그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	동0 동0	Γŀ	i (서울 바라 시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L 0 	=	₹	₹	マ	
	<u> </u>	гłо		휴 곡		F-	10	Н	찬	
स्	희 ⊡	3,022.5	19,553.7		19,553.7	2,689.2	2,689.2	505.7	438.1	38,593.0 38,517.7
푀	<u>저</u> 전	440,063.6		549,431.0		000	6,702.3	58,895.0	1,360.9	1,334,324.7
	타	ЦO		舌		F-	10	Н	첫	
	도	. 방이동 88-3		: 방이동 88-2		방이동	89-27	방이동 89-28	방이동 89-26	
	나 파	자 집	다 서		까 ማ	짟	표 %	자 집	자 회	(문 00 전 79
	<u>회</u>	7		∞		c	ກ	10	-	卓

※ 지하사용 88-21대 면적산출 : 소유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상면적을 맞추기 위해 수용면적 32.1㎡ 포함 도시계획 면적과 32.1㎡ 차이 발생

Ⅲ
КН
Π-
베
-
ф
₹
$\overline{}$
颤
_
≺
КН
\overline{K}
Ш

		29일까지
		12월
		2015년
+		취득일로부터
9호선 921공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용권리
지하철 9.	서울특별	4 交
소구명:	소재지: /	사용기간
0	0	0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Σ			20	15. 11. 3						
	I.		935 정거장	935 정거장	935 정거장	935 정거장	935 정거장	936 정거장	936 정거장	
	소유권이외	H H H H					지상권	지상권		
	l 관 계 인	ĸ⊦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ի 0	동0 B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_	유자	K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이윤 88	유이운 88	서울특별시	
	\leftrightarrow	돈0 E0	₹	₹	\forall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र	
) 	실제	<u> 수</u> 이 행	Ы	Ш	버	버	옥외 전시장	A 시설	FIO	
-	잣	园	641.0	1,012.0	90.06	1,778.0 1,778.0	3,962.2 3,932.6	3,003.0	2,642.2 2,642.2	13,128.4
- - J	旧	저	14,565.3	1,787.1	3,617.7	39,408.6	82,258.4	549,431.0	8,762.3	699,830.4
-	피면	<u> </u>	버	버	버	버	품	舌	FIO	
) J	Ħ		방이동 94-3	방이동 4	방이동 11	사이동 88-17	방이동 88-21	방이동 88-2	방이동 89-27	
	ם	H H	전 전 성 전	전 전 전 전	다 장 장	다 전 전 전	자 전 정	전 전 전 전	자 포 성 &	다 표 서 선
	Ħ	건 년	_	2	3	4	5	9	2	합계

五 금회 수용면적 32.1m² 일시사용 88-21대 면적산출 : 소유자 국민체육진홍공단 보상면적을 맞추기 위해

토지조서 (일시사용-부대시설)

0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0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					2010.	11. 20.
	-	935	출입구#1	935 출입구#1	935 출입구#4	935 출입구#3	935 외부E/V	935 출입구#2 환기구3EA 외부E/V	936 환승통로 대체출입구	
소유권이외	부에게 지금이 사용 지금 사용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		
ll 관계 인	K⊢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성내동 지점)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15-9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이해	>> B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유	κ⊦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7 64-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왕이공 88	서울특별시	
싞	상	재단법인기독교대	한감리회유지재단	₹	₹	₹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マ	
	<u> </u>	ī	5	Щ	Н	버	버	사 전시장	버	
ŘΓ	띠	48.0	48.0	557.0 557.0	0.79	463.0	40.0	750.3	652.1 652.1	2,577.4
핍	지 적		1,6/1.4	14,565.3	1,787.1	3,617.7	39,408.6	82,258.4	58,895.0	202,203.5
<u>Б</u>	<u> </u>	ī	<u> </u>	Щ	버	Щ	버	古	Щ	
Ŧ		상이	45-4	방이동 94-3	방이동 4	사 1	방이동 88-17	방이동 88-21	방이동 89-28	
L	는 님	짞	四 0万	자 전 교	사 전	다. 전 설	자 및 서 70	자 포 전 70	자 포기 서 또	다 품- 너 판
E	ZT 		-	2	က	4	2	9	_	神平

토지조서 (일시사용-부대시설 - 보상기간분할)

0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0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4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크	935정거장환기구#4	본선환기구935S1E1			
소유권이외	분 연 문 금 대 대	다	<u>.</u> .0			
관계 인	K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이해관계	동0 B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女	K ⊦	00 H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o⊧ <4	초0 료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수 하 해	어 어 다	전시장			
हा	면	1,794.5	1,794.5	1,794.5	1,794.5	
팝	포	82,258.4		82,258.4		
D F	<u> </u> -	풉				
	<u>₹</u>	日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년 누	다 '서	표) 92	자 '서	元 公 公	
Ŧ	27 2 <u>1</u>	-	_		<u>₹</u> 511	

0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0 사용기간 당초 : 2014년 07월 01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2015년 07월 01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3	I		Ī	ᆈ	रूा		섞	유	이해관	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u>:</u>
2) E)	<u>ተ</u>	≺	<u>≺</u>	<u> </u>	희	으 수0 % 帧	조0 료0	κ⊦ ∢⊦	호0 로0	K⊢	w 마 왕	크
-	자 전 성 성	방이동 88-21	풉	82,258.4	1,611.4	사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왕이운 8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935정거 장환기구#4 본선환기구935S1E1
中	자 판			82,258.4	1,611.4							

토지조서 (일시사용 - 수용 전 일시보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2013년 12월 01일 ~ 2014년 09월 30일 변경 : 2013년 12월 01일 ~ 2014년 09월 30일

±]	Ŧ	타	ᆈ	स्र	게 C	상	자		이해관계요	이	소유권이외	
건 년	H H		<u> </u>	저	면		동0 묘0	Κ⊢	조0 표0	Κŀ	≺⊦	부 에 그 에 음 근 에 음 근 에	런
	자				86.1								88-2번지에서 분할
		왕	굼	86.1		파 등 파	서울올림픽기념국민	방 등 88					라인 첫 3시3 한기구
	0万 0万 0万	88-25	:		86.1	<u>₹</u>	제표소송하다						(935S2,
													정거장환기구#2)
c	ᅜ	얆	=======================================	0.130	251.3	짜	서울올림픽기념국민						88-2번지에서 분할
7	心 (正	88-26	5	6.162	251.3	국 V	체육진흥공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정거장 출입구 #1
c	자	왕	₹	7 7 7	54.7	本地	서울올림픽기념국민						88-2번지에서 분할
ი -	心 77	88-27	5	04./	54.7	국 V	체육진흥공단	00 10 10					정거장 출입구 #1
_	다 '서	유	₹	C	32.3	平	서울올림픽기념국민						88-2번지에서 분할
4	型 0万	88-28	5	32.3	32.3	국	체육진흥공단	88 % % %					정거장 환기구#3
	다 서				76.4								88-2번지에서 분할
)	바이유				的 示	서운오리피기년구미						본선 및 정거장
2	火 五	88-29	굼	76.4	76.4	- 제	시르르미그(1日그 C. 체육진흥공단	왕에 88					환기구 (02651
)				-								(330E1, 정거장환기구#4)
īσ̄ι	자			C	500.8								
天	元 22			200.8	5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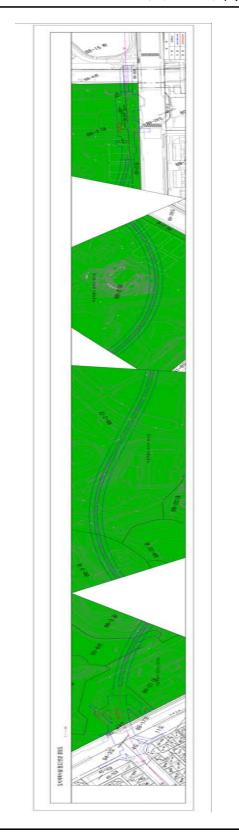
IZ시エ								2015.	0
				935정거장	935정거장		900 17 17	50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소유자	KI-	서울특별시 중구 대평로 1가 64-8	서울특별시 중구 대평로 1가 64-8			8 6 6 6 7 7	
			주0 B0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물건조서 (지장물)		† ≺		22m 1개소소 1개소소 1주 1주 2주주 22m	27.5m 144 344 33m 27.5m 27.5m 27.5m	1식 39m	6EA 5EA 3EA	6EA 1EA 2EA	4EA 1EA
물건조서		다 장		능형망 철제 자바라 구상나무 주목 사철나무	모 참 참 장 3.4.4 소.4.4 c.4	주차장 매표소	보조등(투사식) 투사등 볼라드형	우수맨홀 전기맨홀 스프링쿨러밸브	압격밸니실
		지	띠는 KHO	대 문 사 사 사 사 사 사 사 가 하고 보고 보고 하고 되는 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를 가다면 생물을 하는데 무슨 사람이 보고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되었다. 그 나는 그들은 이 보고 있는데 그 나는 그들은 이 보고 있다. 그 나는 그들은 이 보고 있다. 그 나는 그들은 이 보고 있다. 그 나는 그들은 그를 보고 있다. 그 나는	문 비 선 성	<u>소형물</u> 주명시설	취 세	스프링클러 도시가스
rL		- -	<u> </u>	<u>-</u>			퓸		
ㅇ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Ŧ	₹	방이동 45-4	방이동 45-4	방이동 88-21			
: 음:	지 : 서울	I	F F	.전 .전	표기 성0		·ŀ	44 44	
는 는 은 ()	0 소계	Ŧ	27 27		-		C	N	

· ^	_	제3:											_		_	_	_												<u> </u>	11.	_
Γ·						935정거장																935정거장									
소유자	K⊢					방이동 88																방이동 88									
\ 1	자 판						고 II 세 파 신 하 이 년														i i (서울올림픽기념	보면 44 보신 86 년 								
台		<u></u>	- K	- KF	- K	اب اب د	±23 + k₁	宁	2주	K K	长9	간	39m		j į	SEA	3EA	6EA	1EA	2EA	4EA	1EA	忙	~	₩	. K├	£€ Κ+€	23주	산9	片2	长
다 저 忌		계수나무		- 말 교	- i	1 T	上 行 行 行	마스템 이	자무면	참	하다	주차장 매표소) I	나수에	등 다 다 대 다 대 다 대 다 대 다 대 다 대 다 대 다 대 स स स स	우수맨홀	전기맨홀	스프링쿨러밸브	- P	(U 	계수나무	나티나	다왔 다음	꿃	파 게 대 대	사무	이표가	자목면	파고
B 지 기						사						선병	立) I	전 80 매	사 면 시설] -)		뻬		스프링클러	도시가스						√r ∵⊢			
댐	<u> </u>					古								:								굼									
Ŧ					III C	80 <u>00</u> 00 00	17-00														1	유	17–88								
П	ト ト					짟																元 70 70 70 70									
E S	27 27																C	1													

시보	제33	B 2 2호 		/ 시울국일시	2015. 11. 26.(
1	건			936정거장	
소유자	K ⊢			상이공 88	
₹	至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to :H	4EA 1EA 4EA 1EA	4EA 4EA	55 የት የተ የተ የተ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የ	K+ K+ K+ K+
Κ -	KHO 미는	동1군 gate	우수맨홀 전기맨홀	다. 다	스트로 다 장나 다 아의 나 마 이 아의 나 마 이 아의 나 마 씨 바 나 마 씨 바 나 마
지	K¦0	가로등 조형물 공원표지판 자전거보관소	/에 품J	어 (나	
D F	<u>∦</u> Г			풉	
	<u>≺</u> 21			방이동 88-2	
I	ት ት			다 서	
± 8	27 27			т	

시모	제33	822호		↑ 시 울 극걸시 2015. 11
Į.	건			936정거장
소유자	K ⊢			88 되 이유
≺ 1	장 B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o :⊢	4EA 1EA 4EA 1EA	4EA 4EA	ななされ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
ΚH	M ≓	동1군 gate	우수맨홀 전기맨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지	K40 N =	가로등 조형물 공원표지판 자전거보관소	품J 에메	메୮ <⊢
П Н	 			<u>.</u> ਨ
Ŧ	<u>≺</u> 21			방이동 88-2
I	누 -			표기 02
 E	27 27			ю

						물건조사	물건조서 (영업권)					
O 소	\times \t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上市公									
₹ 8]		- E	de	기 다 면 면 08		o⊨ <1	삭	o 등	11 관계 인	수유권이외	
건 건	는 년	₹	<u> </u>	50 भ र0	Π = K∮O	to :H	동0 B0	K ⊦	동0 문0	K ⊢	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u> </u>
+	다 '서	방이동 88-2	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테니스장	2 면	서울올림픽기념					17면 중
_	표기 202	방이동 88-2	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테니스장	2 면	국민체육진흥공단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명 작幸
합 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624호(1985.9.2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호(2015.2.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노원구 공릉동172 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172 일대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어린이집 2개동의 신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위 치	5	<u>년</u> 적 (m	2)	최 초	비고
시설당	종 류	귀 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н ж
학교	대학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503,528.0	I	503,528.0	서고시 제624호 (1985.9.21)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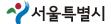
(1) 구역계획[변경 없음]

구역	구분	면적 (m²)	구역	구분	면적 (m²)
	①	61,200	상징경관구역	8	51,315
	2	56,119	000177	9	5,532
	3	5,319	소	: 계	56,847
일반관리구역	4)	45,100	· 외부활동구역	10	9,718
	(5)	23,435] <u> </u>	(1)	31,753
	6	53,559	소	: 계	41,471
	①	27,467	· 녹지보존구역	12	127,818
	: 계	272,199]	(13)	5,193
7	- /1	212,199	소	: 계	133,011
		합 계			503,528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법 정	사용 건	폐율(%)	관 리	비고
Tで	기준면적(m²)	건폐율(%)	기정	변경	건폐율(%)	비포
제2종 일반주거지역	415,637	60.00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① 비오톱1등급지 : 21,005㎡
자연녹지지역	:지지역 49,150		14.87	14.98	22.17	② 도로(도시계획) : 17,736㎡ 계 : 38,741㎡
계	464,787	55.77				※ 산정기준 면적 계산 503,528㎡-38,741㎡ = 467,787㎡

[※] 학교용지 면적(503,528m²) 대비 법정 건폐율 51.48%, 사용 건폐율 13.83%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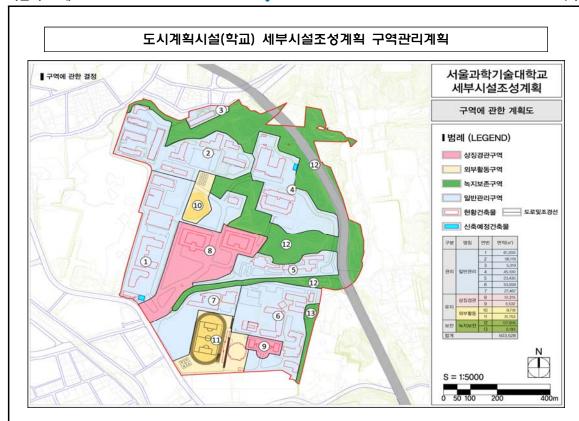
구역			용적률	₫ (%)				
구분	법정용적률	사용용 기정	용적률 변경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높이(m)	비고
1	200.00	68.28	69.07	111.15	_	115.00	●지표로부터 최대 35~50m 이하	직장어린이집铴 신축 사용용적률 증) 0.79
2	200.00	129.96	129.96	129.96	_	135.00	●지표로부터 최대 35m 이하	_
3	200.00	149.50	149.50	149.50	-	150.00	●지표로부터 최대 35m 이하	-
4	182.27	81.31	82.78	179.98	_	182.27	●지표로부터 최대 35~45m 이하	직장어린이집⑩ 신축 사용용적률 증) 1.47
5	151.53	52.74	52.74	52.74	_	60.00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_
6	200.00	95.71	95.71	129.31	_	135.00	●지표로부터 최대 20~55m 이하	_
7	200.00	36.00	36.00	81.51	_	85.00	●지표로부터 최대 45~50m 이하	_
8	200.00	35.44	35.44	35.44	_	40.00	●지표로부터 최대 12~25m 이하	상징경관구역 (다산창학관)
9	200.00	31.55	31.55	31.55	_	40.00	●지표로부터 최대 25m 이하	상징경관구역 (대륙관)
10	200.00	0.00	0.00	0.00	_	10.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붕어방)
11	200.00	12.62	12.62	28.70	-	30.00	●지표로부터 최대 12~35m 이하	외부활동구역 (대운동장)
(12)	167.26	0.02	0.02	0.02	_	0.02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존구역
13	200.00	0.00	0.00	0.00	-	0.00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4) 변경 건축물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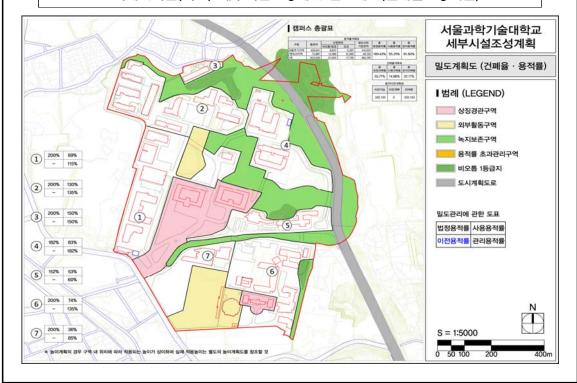
			건축면적	(m²)			건축연면	년적(m²)			지상층[면적(m²)	층	소	
구분	건물명		2종 F거지역	자연 5	두지지 벽		체2종 주거지역	자연녹	지지역	제 일반주	2종 F거지역	자연녹	지지역		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구역	직장어린이집	-	206.96	-	-	-	482.37	-	-	-	482.37	-	-	_	지상 3층	신축
④ 구역	직장어린이집 (TP)	-	309.01	-	-	-	660.00	-	-	-	660.00	-	_	1	지상 3층	신축
	소계	_	515.97	-	-	-	1,142.37	-	-	-	1,142. 37	_	-	_	-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 3. 관계도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노원구 도시계획과(전화 2116-3861) 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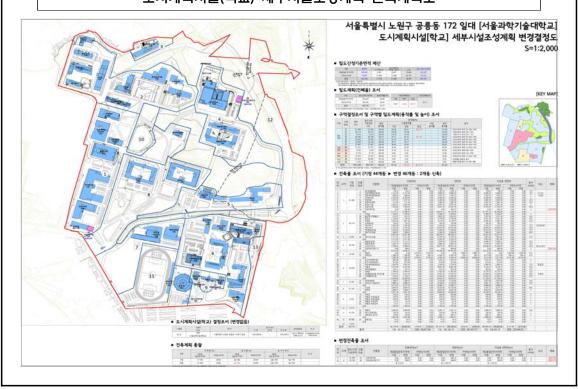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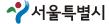


S = 1:5000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관리높이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별도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기 결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높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정된 높이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고시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2025년을 목표로 2010년도 서울특 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 주택재건축사 업부문)의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도시·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2133-7165)

나. 자치구

	열람장소	전화번호
	중구 주택과	☎ 3396−5732
도심권	종로구 주택과	5 2148-2624
	용산구 주택과	a 2199-7344
	성동구 주거정비과	☎ 2286−6578
	광진구 주택과	☎ 450−7697
	동대문구 주택과	a 2127-4673
동북권	중랑구 주택과	☎ 2094−2135
증폭년 	성북구 주거정비과	a 2241–2875
	강북구 주택과	☎ 901−6815
	도봉구 주택과	☎ 2091−3524
	노원구 주택사업과	☎ 2116−3912
	강남구 주택과	☎ 3423−6063
도나귀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3425−5985
동남권	송파구 주거정비과	☎ 2147−2898
	서초구 건축과	☎ 2155−7346



	열람장소	전화번호
	550T	선외인호
	은평구 주거재생과	☎ 351−7366
서북권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330−1640
	마포구 주택과	☎ 3153−9323
	구로구 주택과	☎ 860−2962
	동작구 주택과	☎ 820−9946
	금천구 주택과	☎ 2627−1613
서남권	영등포구 주택과	☎ 2670−3662
	양천구 균형개발과	☎ 2620−3502
	강서구 주택과	☎ 2600−6150
	관악구 주택과	☎ 879−6303

다. 본 기본계획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8호

도로	Ē 노선의 [○ [] 지정] 변경] 폐지	고시			
도로법 [] 제19조제 도로법 [○] 제21조제3	1항 또는 제20 항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변경 하 [] 폐지	였음을 고시합	나다.			

2015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 지정 [O]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노선번호	C1(경유도로)	C1(경유도로)

구분		[] 지정 [O] 기존	[] 폐지 [O] 변경
노선명		퇴계로	퇴계로
기점		봉래동2가 122	봉래동2가 122
종점		광희동2가 319	광희동2가 319
주요 :	통과지	회현동	회현동, 중림동
총연장 (킬로미터)	3.15	3.70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 청파로(21) 0.32 - 칠패길(2115) 0.18 - 의주로(22) 0.30 - 서울역고가(C1) (-)0.25
구간	연장 (킬로미터)		0.5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67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02012125	미본이엔씨	이민형	송파구 가락로16길 2-19, 5층(석촌동,진영빌딩)	등록기준 미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2015.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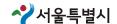
- 나. 처분내용 : 측량업 등록취소
- 다. 처분사유 : 등록기준(부존재, 기술인력 미충족 등) 미달
- 라. 측량업 계속 수행: 등록취소를 받은 측량업자나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 다만 처분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측량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관련법 제53조)
- 마. 측량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 등록하거나 등록업체 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관련법 제47조)
- 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 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6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설립인가 취소내역

	조 합	· 현 황	취소사유	취소일자
명칭 대표 소재지		뒤포자ㅠ	위꼬털자	
새희망 의료생활협동조합	오동주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34 투에프코트빌딩 31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5호	2015.11.16.

2. 기타사항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2133-536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81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주)다산이엔지	주재건,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37길 56,	2015.11.17.
(04-003413)	(114-81-79498)	이상헌	(봉천동, 동아아파트비상가)	
공공측량업	(주)경일기술단	허 용,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8길 32,	2015.11.17
(03-000864)	(220-81-05286)	황용식	401호(개포동, 대연빌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8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변경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내역

등록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	모집기간
번호	<u> </u>	포제시	<u> </u>	(백만원)	지역	사용기간
		사단법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휴먼인러브 273 에이스트윈타워 .	○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 해외 취약계층 대상 동회책 보급	100 (현금)	전국	' 15.3.1 ~' 15.12.31
2015	사단법인 휴머인러브		○ 국내외 긴급구조 구호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15.3.1 ~' 16.3.31
-25-2	(대표 김영후)	2차 901호	※ 변경내용 : 모집목적 추가, 사용기- 모집목적 : (추가) 취약계층 의료			
			- 사용기간 : (당초) ' 15.3.1 ~ ' 15.12.31 (변경) ' 15.3.1 ~ ' 16.3.31			
2015_108	동물보호시민 단체카라	- '- :	유기동물 지원 등 동물보호사업	930 (현금 및 물품)	전국	' 15.11.11 ~' 16.11.10
2015-108	122	122	○ ㅠ기증할 시전 중 중찰포오사립			' 15.11.11 ~' 17.11.10
2015-109	CJ나눔재단 서울 중구	인천지역 소외계층	300	7.7	' 15.11.11 ~' 16.1.10	
2010 109	(대표 이재현)	소월로 2길 12	아동 · 청소년 교육 지원	(현금)	전국	' 15.11.11 ~' 16.11.10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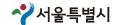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서군의 권인이 되는 사물 -	시 전네 등
김장현	경기도 의왕시 원터아랫길 *1-* (청계동)	일시 : 2015-09-01 05:52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 초과	과태료:30만원
강부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99, *29-*0*호 (반송동)	일시 : 2015-09-03 08:07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축하중 1.3t 초과	과태료:50만원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2, *0*호 (신읍동)	일시 : 2015-09-04 04:2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최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 초과	과태료:30만원
이성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1*, A-**5호 (건건동)	일시 : 2015-09-04 07:18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총중량10.45t 초과	과태료:80만원
김봉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 (상일동)	일시 : 2015-09-09 06:14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최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송승철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로 2-9,302호 (송월동1가)	일시 : 2015-09-16 11:37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축하중 1.3t 초과	과태료:50만원
정영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51번길 *7-*, *층 우호 (구운동)	일시 : 2015-09-17 15:33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축하중 1.55t 초과	과태료:5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에 전문의 전한에 되는 사결 	시간네공
남궁양원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28번길 *1,B-**2호 (회덕동)	일시 : 2015-07-12 06:14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최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함광석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38번길 18, *동*1호 (덕계동)	일시 : 2015-07-21 06:54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5. 12. 31.
-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테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 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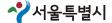
-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9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톡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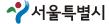
-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되보이 일이어 다느 지시	취보 내용	
성명	주 소	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강병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9, ***동 ***호(죽전동, 용인죽전동부센트레빌)	일시: 2014. 2. 27. 06:20 장소: 성산대교 남단 램프 내용: 관리청 단속 요구에 불응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50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황경환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18, **동 ***호(가정동, 하나아파트)	일시: 2015. 7. 15. 14:22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43t 초과, 2회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손경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5번길 * (용원동)	일시: 2015. 9. 15. 05:20 장소: 신월IC 내용: 제한 총중량 4.85t 초과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5. 12. 31.	
박성제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동 ****호(중산동, 영종7단지엘에이치)	일시: 2015. 10. 5. 11:02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2.15t 초과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에 전한 전한이 되는 시설 	시군 네ㅎ
문인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8길 **-* (송현동)	일시: 2015. 4. 29. 18:26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4.15m 초과	처분일: 2015. 8.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10. 31.
임순환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25, ***동 ***호(정왕동, 계룡아파트)	일시: 2015. 7. 15. 06:06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높이 0.29m 초과	처분일: 2015. 8.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10. 31.
김순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5길 **-*, ***호(개봉동)	일시: 2015. 7. 18. 15:40 장소: 올림픽대로 염창IC 내용: 제한 폭 0.2m 초과	처분일: 2015. 8.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10. 31.
정기전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01, ****동 ***호(목동동, 휴먼시아 해솔마을)	일시: 2015. 7. 23. 15:39 장소: 올림픽대로 염챙C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5. 8.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10. 31.
이상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8, ***동 ***호(계산동, 대영리치빌)	일시: 2015. 7. 29. 11:24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49t 초과	처분일: 2015.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5. 10. 31.
김원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55번길 10-**, ***호(경서동, 보성***)	일시: 2015. 8. 6. 09:15 장소: 양천로 내용: 제한 축하중 1.45t 초과	처분일: 2015.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5. 10. 31.

-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5. 납부기한: 2015. 12.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 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 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 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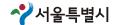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공고기간 : 2015. 11. 26.(목) ~ 2015. 12. 10.(목)
- 2. 공고대상

연번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청문일시 및 장소	예정 처분
1	㈜진용종합건설 최명운	건축공사업 02-1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4, 306 (독산동, 서원빌딩)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2015.12.17.(목) 14:00 시설안전과 청문실	등록말소 등
2	에이큐건설(주) 김재용	조경공사업 10072 토목건축공사업 25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9길 35 (가양동, 한림빌딩)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2015.12.22.(화) 14:00 시설안전과 청문실	등록말소 등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4. 공고내용

가. 청문 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비서류: ①참석자신분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인감도장,

④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⑤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⑥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0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모집	모집기간
번호	그 다 시	고세시	·		지역	사용기간
2015 110	사단법인 시민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어서, 항경, 이리, 등 곳이네어	990	저그	' 16.1.1 ~' 16.12.31
2015-110 (대표 정현백)	정당보도 02일 1, 4층	. ○ 여성, 환경, 인권 등 공익사업 프로젝트 지원	(현금)	전국	' 16.1.1 ~' 17.12.31	
	동물보호시민단체 서울 마포구 카라 잔다리로 122	등물보호시민단체 서울 마포구	○ 동물보호 인식전환 캠페인 등	930 (현금 및 물품)	전국	14.12.19 ~15.10.31
2014-93			동물보호사업			14.12.19 ~16.10.30
-1		잔다리로 122	※ 변경내용 : 사용기간 변경- 사용기간 : (당초) ' 14.12.19 ~ ' 15.10.31			
			(변경) ' 14.12.19 ~ ' 16.10.30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5-1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112호(2002.04.06)로 결정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숭인 동 746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11.16)를 거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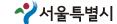
2015년 11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주차장
 -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m²)		최초	
구분	변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폐지	1	노외주차장	숭인동 746번지	295	감)295	-	2001.7.28. (종고2001-82)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주차장 폐지 - 면적 : 295㎡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이 연접하고 있어 주차장 차량진출입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주차장을 폐지하고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자 함.



- 나. 사회복지시설
-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7 11	도면표시	니서대	OI ŤI		면 적 (m²)	최초	ul ¬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숭인동 746번지	-	증)295	295	-	제2종일반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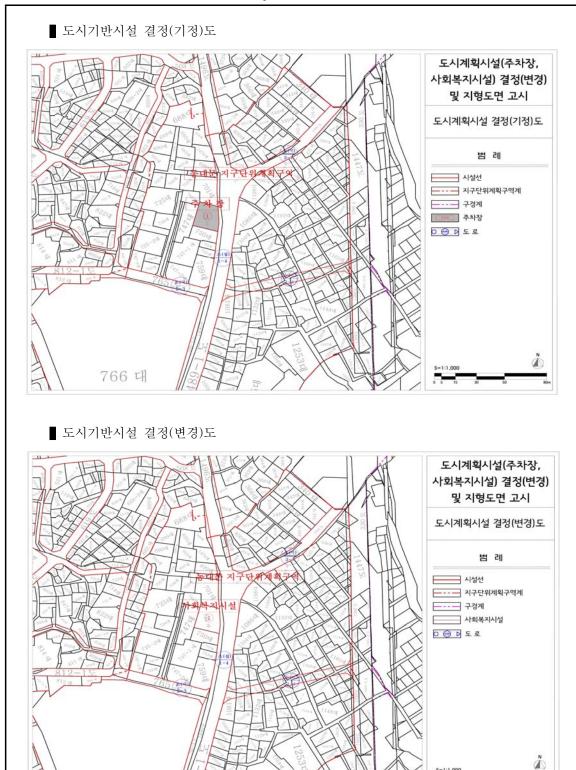
2)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이하	200%이하	15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설 - 면적 : 295㎡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2.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6 대



◈ 용산구고시 제2015-15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2000-362호(2001.1.6)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999호 외 3필지 상 용산민자역사에 대하여 면세점 유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15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999호 외 3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 용산 민자역사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다. 사업규모

명 칭	규 모(m²)	변 경 내 용
용산 민자역사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277,548.58㎡ → 278,105.21㎡ 증) 556.63㎡	●HDC신라면세점 주차장 및 승하차장 변경 - 1층, 3층 판매시설 증축 ●HDC신라면세점 MD 개편 - 4층, 5층 판매시설 증축 ●아이파크몰 MD 개편 - 1층, 7층 판매시설 증축 및 용도변경 - 3층 용도변경 및 건축물 표시변경 - 4층 용도변경 - 6층 용도변경 및 대수선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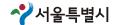
○ 성 명 : ㈜현대아아파크몰 대표이사 양창훈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착공신고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m²)	소	유 자	비고
번호	그제지	시킨 	시크	[한 국 (81)	성 명	주 소	비포
1	한강로3가	40-961	철도용지	33.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한 연조하기	40 301	르노6시	00.0	[건국글포증제	중앙로 240 (소제동)	
2	한강로3가	40-999	철도용지	116,403.0	국(국토교통부)	_	
3	한강로3가	40-1010	철도용지	1,735.5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3	5377	40-1010	결포증시	1,733.3	인수얼포하자	중앙로 240 (소제동)	
4	한강로3가	40-1026	철도용지	8,759.2	국(국토교통부)	_	
		계	•	126,930.7	_	_	



- 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설치비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아.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 자. 자금조달계획
 - 합작회사의 특허취득에 부합토록 재원 구성하여 조달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5-16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98호(2015. 8.1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129호(2015. 10. 8.)로 실시계 획 작성고시된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 위치(변경없음): 서대문구 남가좌2동 3-75외 8필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1,134㎡, 입체식 주차장 약 99면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변경조서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공사

Od H-	구분	소재기 (위치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27	ず正	동	번지	시축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ηΨ
						33.058	이현애	서대문구 남가좌동 3-75				
1	당초	남가좌동	3-75	대	231	131.826	유연례	서대문구 남가좌동 3-75	㈜우리은 행	중구 회현동1가 203호(종로4가지점)	근저당권	
						66.116	이종훈	은평구 증산로13가닐 9-11, 301호(증산동)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남가좌동	3-76	대	172	172	이인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6 2층	중소기업 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응암역지점)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3	당초	남가좌동	3-78	대	132	132	지윤서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19, 106동 604호(역삼동, 역삼래미안)	유만재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4	당초	남가좌동	3-79	대	159	159	홍성덕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5길 8(남가좌동)	㈜한국스 탠다드차 타드은행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5	당초	남가좌동	3-93	대	136	136	이현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번길 10, 1201동 105호(구미동, 무지개마을)	유만재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소유권
3	변경	남가좌동	3-93	대	136	136	이예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03, 101동 1804호(오포우림아파트)	유만재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채무자 : 이현준	근저당권	변경
6	당초	남가좌동	3-94	대	129	129	김종필	동대문구 장안로27가길 39 나동 201호 (장안동금성연립)	풍납동새 마을금고	송파구 풍성로 40(풍납동)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7	당초	남가좌동	3-95	대	132	132	이경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88-6(신평동 3-252) 1층				소유권
	변경	남가좌동	3-95	대	132	132	김윤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88-6(신평동 3-252) 1층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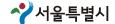
연번	구분	소재 (위 <i>키</i>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12	TE	띵	번지	시크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 117
8	당초	남가좌동	3-113	도로	23	23	김종필	동대문구 장안로27가길 39 나동 201호 (장안동금성연립)	풍납동새 마을금고	송파구 풍성로 40(풍납동)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9	당초	남가좌동	3-116	도로	20	20	이현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번길 10, 1201동 105호(구미동, 무지개마을)	유만재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소유 권
	변경	남가좌동	3-116	도로	20	20	이예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03, 101동 1804호(오포우림아파트)	유만재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채무자 : 이현준	근저당권	변경
							-	이 하 여	백 -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여번	구분	소재 (위치		물건의	구조및	면적 (m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20	TE	ИО	번지	종	규격	및 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미끄
				건물(지)	연와조	27	이현애	서대문구 남가좌동 3-75				지01호
				건물(1)	연와조	103	유연례	서대문구 명지대5길 4(남가좌동)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호(종로4가지점)	근저당권	101호
1	당초	남가좌동	3-75	건물(2)	연와조	81	이종훈	은평구 증산로13가길 9-11, 301호(증산동)				201호
				대문	철제	1식						
				담장	벽돌	1식						
	변경							(변경없음)				
				건물(지)	연와조	32						
				건물(1)	연와조	90						
	당초	남가좌동	3-76	건물(2)	연와조	82	이인철	서대문구 남가좌동 3-76 2층	중소기업은 행	중구 을지로2가 50 (응암역지점)	근저당권	
2				대문	철제	1식						
				담장	벽돌	1식						
	변경							(변경없음)				

연번	78	소재: (위치		물건의	구조및	면적 (m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ш
선민	구분	동	번지	종 류	규격	및 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건물(지)	연와조	25						
	FI ÷	1131715	. 70	건물(1)	연와조	80	71011	강남구 선릉로69길 19,	OTH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7-1-171	
3	당소	남가좌동	3-78	대문	철제	1식	지윤서	106동 604호(역삼동, 역삼래미안)	유만재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담장	벽돌	1식						
	변경							(변경없음)				
				건물(지)	연와조	26						
				건물(1)	연와조	88			㈜한국스탠			
4	당초	남가좌동	3-79	건물(2)	연와조	85	홍성덕	서대문구 명지대5길 8(남가좌동)	다드차타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근저당권	
т				대문	목제	1식			은행			
				담장	벽돌	1식						
	변경							(변경없음)				
				건물(지)	연와조	67						
				건물(1)	연와조	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당초	남가좌동	3-93	건물(2)	연와조	67	이현준	미금로22번길 10, 1201동	유만재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L. 10L	소유: 변경
				대문	철제	1식		105호(구미동, 무지개마을)				현황:
5				담장	벽돌	1식						량에 따른
				건물(1)	연와조	67						면적 정정
	비견	남가좌동	2_02	건물(2)	연 <u>와</u> 조 6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이예지 903, 101동 유만째 506호(대치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23	급기작공	3-93	대문	철제	1식	이에시	903, 101중 1804호(오포우림아파트)	ㅠ인세	채무자 : 이현준		
				담장	벽돌	1식						
				건물(지)	연와조	42						
				건물(1)	연와조	67		동대문구 장안로27가길 39	- 풍납동새마			
	당초	남가좌동	3-94	건물(2)	연와조	67	김종필	나동 201호 (장안동금성연립)	을금고	송파구 풍성로 40(풍납동)	근저당권	
				대문	철제	1식		(00000001)				현황
6				<u></u> 담장 건물(지)	벽돌 연와조	1식 42						량에 따른
,				건물(시)	연와조	67						면적
	비견	남가좌동	3_04				기조피	동대문구 장안로27가길 39	- - - - - - - - - - - - - - - - - - -	소파그 푸서리 40/프나도\	그저다기	정정
	건경	리기작중	JO-94	건물(2) 대문	연와조 철제	16 1식	김종필	나동 201호 (장안동금성연립)	을금고	송파구 풍성로 40(풍납동)	근저당권	
					설계 벽돌	1식						
				거무(지)	연와조	24						
				건물(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당초	남가좌동	3-95	건물(1) 대문	연와조 철제	87 1식	이경옥	188-6(신평동 3-252) 1층				
7				대문 담장	벽돌	1식						소유
7				건물(지)	연와조	24						변경
	 변경	남가좌동	3-95	건물(1)	연와조	87	- 김윤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대문	철제	1식		188-6(신평동 3-252) 1층				
				담장	벽돌	1식						
								이 하 여	백 -			



◈ 마포구고시 제2015-19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건설부고시 제229호(1983.07.06.)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8호(2015.07.30.) 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구 신수동 1-1 일대 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서강대학교 경제관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1) 사업시행 면적: 158,883m²(변경없음)

2) 구역별 밀도계획

구 분	대 <i>저 (:</i>)	건피	ᅨ율	용건	덕률
丁 正	면적(m²)	법정(%)	관리(%)	법정(%)	관리(%)
①일반관리구역	38,977	33.34	40	155.56	110
②일반관리구역	57,836	57.60	42	207.84	250
③일반관리구역	13,051	57.75	35	199.43	195
④상징경관구역	9,307	51.02	_	193.19	_
⑤외부활동구역	17,420	7.14	38	168.83	1
⑥녹지보존구역	22,292	30.00	_	150.00	_
합 계	158,883	45.61	32.14	181.46	135.8

3) 증축시설(금회 변경사항)

건물명	구역	건축면적(m²)	연면적(m²)	건폐율(%)	용적률(%)	규 모	비고
경제관	②일반관리	1,248.76	7,890.57	33.69	205.97	지하1층, 지상7층	

4) 건축물의 조서(금회 변경사항)

순번	건물	 건 물 명	건축면	적(m²)		연면적(m²)		지상층연면적(m²)			비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고
1	1	본 관	1,174.28	1,174.28	4,183.63	4,183.63	3,617.98	3,617.98	1	4	
2	2	학 생 회 관	1,456.40	-	4,234.80	-	4,054.80	_	1	4	금회 철거
3	3	체 육 관	1,947.60	1,947.60	5,632.13	5,632.13	3,914.11	3,914.11	1	2	
4	4	김 대 건 관	2,557.97	2,557.97	14,283.52		12,103.83	12,103.83	1	5	
5	5	가브리엘부속창고	84.87	84.87	84.87	84.87	84.87	84.87	-	1	
6	6	우정관(이중근 학생회관)	1,327.70	1,327.70	10,000.68	10,000.68	8,365.90	8,365.90	1	7	
7	7	강 당	1,040.50	1,040.50	1,979.18	1,979.18	1,613.69	1,613.69	1	3	
8	8	예수회 교수회관	652.50	652.50	2,044.38	2,044.38	2,044.38	2,044.38	_	4	
9	9	도 서 1 관	1,558.29	1,558.29	5,415.73	5,415.73	5,106.34	5,106.34	1	3	
10	10	도 서 2 관	971.10	971.10	4,749.91	4,749.91	4,112.16	4,112.16	1	5	
11	12	국제인문관/산학관	3,659.51	3,659.51	29,775.10	29,775.10	22,153.12	22,153.12	2	10	
12	13	신 과 학 관	793.89	793.89	3,966.16	3,966.16	3,966.16	3,966.16	-	6	
13	15	다 산 관	3,072.62	3,072.62	10,196.15	10,196.15	8,780.55	8,780.55	1	6	
14	16	성이냐시오관	1,918.00	1,918.00	4,058.15	4,058.15	2,958.58	2,958.58	1	3	
15	17	공 학 관	1,109.12	1,109.12	8,029.41	8,029.41	7,935.81	7,935.81	1	10	
16	18	제2학생회관	2,312.12	2,312.12	3,436.29	3,436.29	2,056.80	2,056.80	2	3	
17	19	도 서 3 관	901.64	901.64	3,735.54	3,735.54	3,735.54	3,735.54	-	5	
18	20	가 브 리 엘 관	1,304.65	1,304.65	6,767.29	6,767.29	5,547.79	5,547.79	1	7	
19	21	비지니스센터	426.32	426.32	2,068.61	2,068.61	2,068.61	2,068.61	-	5	
20	22	경 영 관	1,556.77	1,556.77	16,245.93	16,245.93	10,062.72	10,062.72	4	7	
21	23	정 문 경 비 실	45.13	45.13	45.13	45.13	45.13	45.13	-	1	
22	24	지 하 주 차 장	-	1	10,758.50	10,758.50	_	_	4	_	
23	26	동 문 회 관	860.77	860.77	8,461.84	8,461.84	7,843.66	7,843.66	1	11	
24	27	복 합 관	2,023.46	2,023.46	21,721.27	21,721.27	17,702.33	17,702.33	3	12	
25	28	국 제 학 사	1,579.56	1,579.56	19,112.82	19,112.82	16,493.13	16,493.13	2	12	
26	29	지 하 캠 퍼 스	6,468.94	6,468.94	22,676.86	22,676.86	128.35	128.35	3	1	
27	31	복 합 관 창 고	16.22	16.22	16.22	16.22	16.22	16.22	-	1	
28	32	인 문 사 회 관	1,502.13	1,502.13	7,138.01	7,138.01	6,905.32	6,905.32	1	5	
29	33	경 영 교 육 원	1,020.41	1,020.41	8,526.73	8,526.73	7,117.94	7,117.94	2	9	
30	34	폐기물보관소	16.22	16.22	16.22	16.22	16.22	16.22	-	1	
31	35	인공광합성연구센터	761.61	761.61	6,669.94	6,669.94	5,047.43	5,047.43	2	8	
32	36	고 시 동	395.67	395.67	2,764.93	2,764.93	2,432.52	2,432.52	1	7	
33	37	경 제 관	-	1,248.76	_	7,890.57	_	6,562.09	1	7	금회 증축
		합 계	44,515.97	44,308.33	248,795.93		178,031.99	180,539.28			
증감			감) 2	07.64	증) 3,6	555.77	증) 2,	507.2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대표 김정택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일로부터 ~ 2017. 2. 28.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편입	소 유	자		이해관기	ᅨ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m²)	편집 면적 (m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1	신수동 1-1	학	63,935	63,55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	신수동 1-4	도	249	249	서 울 특 별 시					
3	신수동 81-162	도	58	58	국 (기획재정부)					
4	신수동 81-163	도	3	3	국 (기획재정부)	신수동 1번지				
5	신수동 81-28	대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6	신수동 81-29	학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7	신수동 81-52	도	60	6	국 (기획재정부)	신수동 1번지				
8	신수동 81-60	도	7	5	국 (국토해양부)					
9	신수동 81-80	도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0	신수동 82-39	도	22	22	서 울 특 별 시					
11	신수동 82-11	대	73	7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2	신수동 82-13	전	23	2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3	신수동 82-15	대	106	10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4	신수동 82-18	도	306	306	서 울 특 별 시					
15	신수동 82-22	도	57	57	서 울 특 별 시					
16	신수동 82-23	대	79	7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7	신수동 82-24	대	76	7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8	신수동 82-28	대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9	신수동 82-42	도	20	20	서 울 특 별 시					
20	신수동 82-31	도	131	131	서 울 특 별 시					
	이하 계속									

67

				편입	소 유	자		이해관계	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m²)	면적 (m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21	신수동 83-3	도	37	37	서 울 특 별 시					
22	신수동 산1-1	임	17,554	33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3	대흥동 22-60	학	64,989	64,77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4	대흥동 22-178	임	1,917	1,9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5	대흥동 40-3	잡	400	388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6	대흥동 40-5	임	526	5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7	대흥동 40-6	임	366	30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8	대흥동 42-2	대	69	6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9	대흥동 43-6	잡	2,255	2,255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0	대흥동 43-7	잡	1,071	1,07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1	대흥동 43-30	대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2	대흥동 43-32	대	36	3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3	대흥동 64-1	대	110	11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4	대흥동 65-2	대	73	7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5	대흥동 65-3	대	216	21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6	대흥동 69-2	대	131	13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7	대흥동 69-5	임	389	38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8	대흥동 72	대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9	대흥동 90-29	도	62	62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40	대흥동 산1-30	임	37,590	21,29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합계			193,125	158,883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15-145호

도시관리계획(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4호(2014.8.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년11월26일강동구청장

- 1. 변경결정 취지
 -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내동 120-35번지 대지분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임.
- 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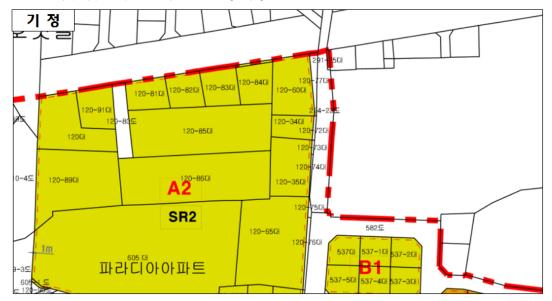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²)	최 초	비고	
下正	TFIG	T 4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н т
기정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원	209,566	_	209,566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다.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 분할 결정 조서

구분	지 번	분할 전 면적(m²)	분할후 면적(m²)	세부변경내용
분할	성내동	479	240	- 성내동 120-35번지(479.0㎡)를 면적 240㎡와 239㎡ 2개 필지
[판결	120-35번지	479	239	로 분할

- 변경사유 : 주택 신축(맞벽건축)에 따른 적정규모 개발을 위해 분할
- ※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없음
- 3.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3425-603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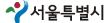
✔서울특별시 <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5-23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5.11.26. ~ 2015.12.9.(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5.12.10. ~ 2015.12.23.(14일)

6. 수령방법: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상세주소	***호 (한남동)	***호 (신정동, 메종빌라트)	* 중동 *** 호 (논현동)	***호 (역삼동)	A동 ***호 (반포동)	***호 (서초동)	() ipd * * *	***동 ***호 (판교용, 판교원마을)	***호 (자곡동, 강남 지웰홈스A동)	*** (자연 (자연도)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헤란로**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로***번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대상내역	반송사유	폐무무과	폐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 발 명	폐문부재
공시송달 미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사전통지 공/	부과예정 마약(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과태료 부과전	위반내용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질서위반	상명/ 편인명	40 보0	년 화	김*자	함 * 최	岭 * \$0	사 *A	다 화	<u>101</u> * K-l	섞) 화	K- **
ΚŪ	사전통지 번호	003151	003155	003157	003158	003160	003161	003163	003164	003168	003169
	서 반년 89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세고영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세목교드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か	-	N	က	4	2	9		ω	o	10

	MI 3 3 Z Z								2015.	11. 20
납세자 상세주소	(모일동)	(호영) (호)	*,***호 (태전동, 미진아파트)	***동 ****호 (상도동, 래미안상도*차아파트)	***호 (쌍문동, 쌍문동LG트윈빌*)	***동 ***호 (신원동, 서초포레스타*단지)	***호 (신림동)	(송정동)	(천부윤)	***동***호 (마장동, 마장에스에이치빌)
남세자 기본주소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번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번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가길 **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폐면부재	폐阳부자		폐민부자	폐문부재	폐 메 대 대	사 물 명	사 실 명	이사불명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부과예정 금액(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원반대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성명/ 범인명	<u>∠</u> п кю́	监 *	<u>본</u> 학	강*숙	22 *합	수 수 수	* 사	中 * 回	다 *	김*곱
사전통지 번호	003172	003179	003180	003181	003182	003185	003189	003198	003205	003506
<u>저 발년</u> 월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003
세고명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과려외반과대류					
세목코디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か	=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세 3 3 2 23				12-	12.1			2015	
남씨자 상세주소	**** 호 (송정동)	(용 등)	A동 **** (자양동)	() 104 ** ** * 0 *	(SB필) 호***	(은행동, 다세대주택)	(SHS) ***	(용금용) 호***	***호 (장기동)	***동 ***호 (용두동, 신설동역대우아이빌)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가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번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번길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번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번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길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
반송사유	폐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자	수취인불명	를 무 무	K- 건 램 묘0	르 라 라	르 라 라	르 라 라	폐무부재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부과예정 금액(원)	50,000	2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워받내용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성명/ 법인명	*t-	i어 * i어	상*교	해명*** 발(주)	김*김	· * *	항 * 0	·本	가. 신	₩ %
사전통지 번호	003210	003213	003214	003217	003218	003220	003222	003223	003226	003233
^궠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003233
세국명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세목코드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화	21	52	23	24	. 52	56	27	88	62	08

2 **1 —	세 3322	<u>×</u>		•		2.1			2015.	11. 26
납세자 상세주소	(明姆医)	(영원나) 전*** 명**	* *** 호 (길도)	***호 (삼선동*가)	**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송인동)	***호 (자양동)	(중40万) 흫*	(90년)	(신창동)
납세자 기본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번길 **	인천광역시 부명구 부남로**번길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번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번길 **
반송사유	폐면부자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사 램 명	를 무 나 자	폐면부재	를 무 나 자	사 건 램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부과예정 금액(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성명/ 법인명	식0 *	<u>*</u>		<u>의</u> 화	<u>∠</u> п o⊢	· · · ·	년 사	<u>본</u> 미 *	마 친	計 *
사전통지 번호	003239	003243	003251	003252	003268	003277	003283	003284	003287	003290
고 라 일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003283	2015-10	2015-10	2015-10 003290
씨 기원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과려위반과태류
세 무고 디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화	31	32	33	34	35	36	37	88	39	40

	M 3322			•					2015.	11. 20
납세자 상세주소	(울등는)	(송파동)	(중추성) 호***	(장안동)	(울믄궁) 호***	(울더난)	(얼더난) 호***	B*호 (청담동)	(중앙호)	A동 *** 호 (금광동)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번길 **-**
반송사유	폐면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폐만부재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부과예정 금액(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성명/ 법인명	야 야	하 * 아	년*Io	당*	₩* 0	点 * *	文o * 0fi	추 교	수. 보	김 *재
사전통지 번호	003292	003296	003297	667800	003300	003304	003308	003310	003312	003316
^젓 발년 월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세고명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과려의바과대로					
세목코드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 —	세 3 3 2 2	<u> </u>		•	12 -	1 2 1			2015.	11. 26
	ı		ı	İ	İ	İ	ı	İ	ı	İ
납세자 상세주소	***호 (자양동, 에코하임)	B**호 (상당동)	(古昌岳)	옥탑층 (동선동*가)	***호 (장안동)	(북변동)	(공다호) 호***	(윤 목동)	***호 (역촌동)	7동 ***호 (불광동)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나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라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나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번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길 **
반송사유	폐면부재	수취인불명	폐면부재	폐면부자	폐모부자	폐문부자	를 무 사	폐문부자	페 무 나 자	폐문부재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부과예정 금액(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자소에 촉이하는 해의			
성명/ 법인명	可 *ir	김 사	⊐ * * *	음 추	다 천	14.71		년 ☆	아*;	K⊢ *
사전통지 번호	003320	003322	003324	003325	003326	003332	003333	003335	003339	003340
거 발년월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세고영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과려의바과대로
세목과디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화	51	52	53	54	55	56	57	28	59	09

	MI 3 3 Z Z								2015	. 11. 20
남세자 상세주소	***호 (신사동)	***호 (역촌동)	***호 (방배동, 우신빌라)	* (역삼5, 동영)	* * * * * * * * * * * * * * * * * * *	***호 (면목동, 나너울카운티***)	(갈현동)	*층 ***호 (남7좌동)	***호 (김호동*가)	(O 단민 영) 학***
남세 <i>자</i>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농우재로**길 *	서울특별시 은명구 갈현로**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가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
반송사유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표 자 사	폐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 소 명	폐문부재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부과예정 급액(원)	25,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위반내용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성명/ 법인명	김*규	사*원	yoon ***ry chan	口*計	김*자	마 **	이*진	bakri ****lla elhami m	®* - -	<u>*</u> *
사전통지 번호	003341	003344	003348	003363	003364	003366	003371	003372	003373	003378
거 발년 월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씨고영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과려의바과데르
세목코드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화	61	62	63	64	99	99	29	89	69	02

= 11 =	·· 0 0 L L	_		•			
납세자 상세주소	(울당)	***호 (중회동, 삼일시티빌)	(자양동)	***호 (신림동)	***동***호 (망원동, 망원*차대림아파트)	** ** ** **	(군자동)
납세자 기본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안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길 **	서울강남구역삼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반송사유	K- 건 팬	폐문부재	폐유부과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자진납부 감면금액(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56,000	40,000
부과예정 금액(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70,000	50,000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성명/ 팝인명	파 * ਆ	<u>본</u> 미 *	<u>₩</u> ⊒п	<u> </u>	년 나	건 Kħ	내*신
사전통지 번호	003380	003389	003390	003395	003396	003398	003415
전 발년 89	2015-10 003380	2015-10 003389	2015-10 003390	2015-10 003395	2015-10 003396	2015-10 003398	2015-10 003415
세무명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세목교디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77 10–288706
화	Z.	72	73	74	. 92	92	77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5-23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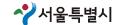
- 1. 건 명: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 3. 공시송달 대상: "세부내역 별첨 참조"
- 4. 공고기간 : 2015.11.26. ~ 2015.12.9.(14일)
- 5. 자진납부기간 : 2015.12.10. ~ 2015.12.23.(14일)
- 6. 수령방법: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명 반송사유	상 편인명	하 (바 (원) (원)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고세대상	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晋0 刊机	*** 드 수취인불명	(주)지*** 테인먼트		(주)지*** 테인먼트	50,000 태인먼트	2015-10 001455 지정된 장소 외의 (주)지***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테인먼트	5-10 001455 지정된 장소 외의 50,000 대인먼트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테인먼트	2015-10 001455 지정된 장소 외의 (주)지***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테인먼트
기불명 시·	수취인불명	80 * *	50,000 명*성	80 * *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명*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주차행위	5-10 00145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명*성	원 2015-10 00145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명*성 주차행위
수취인불명		호 * 0	50,000 01∗臺	호 * 0	바퀴가 있는 이용하여 차도 50,000 이*호 출입하는 행위	이른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59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이*호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10 001459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이*호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른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59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이*호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수취인불명		한 양	50,000	한 양	의용하여 차도 총일하는 행위	이룬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10 001464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른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64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사불명		사 *		사 *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2015-10 00155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5-10 00155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2015-10 00155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폐문부재 경기도		न्द्रगा ** लं	50,000 황*철	न्द्रगा ** लं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001458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황*철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황*철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10 001458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58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황*철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모부째 서울특별시	酉	24.今	50,000	24.今	바퀴가 있는 이용하여 차도 50,000 김*숙 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61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김*숙 폐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10 001461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김*숙 폐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61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김*숙 폐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문부재 서울특별시	画	# *ir	62,000 世*일	# *ir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박*일 주차행위	2015-10 00155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박*일 주차행위	5-10 00155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박*일	2015-10 00155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박*일 주차행위
이사불명		사 ** **		사 ** **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15-10 00155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2015-10 00155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조*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		유	50,000 권*륜	유	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권*륜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주차행위	5-10 00149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권*륜 주차행위	2015-10 00149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권*륜 주차행위
수취인불명		야! 작	50,000 윤*석	유 * 작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001465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른 이상의 바퀴가 있는 2015-10 001465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10 001465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5-10 001465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50,000 윤*석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납세자 상세주소	(원 전원)	(울윤耳)	(송정동)	웨스턴빌리지 ***호 (구산동, 웨스턴 빌리지)	(영남)	(자양동)	***호 (자양동)	(중구요)	(원 당)	(윤녹윤)	(왕西남)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다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 5동로**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길 *
반송사유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사 식 램 뭔	사 링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사 망 로
성명/법인명	음.	± *±	어୮ * 이=	<u>년</u>	주식회사 제이***리 프레쉬	는 * -	고*철	노 다	식기 *A '율기	北 * *	√⊦ * 0¢
부과금액 (원)	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과세대상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임의 장수에 축임하는 행의
과세번호	001467	001466	001470	001471	001473	001474	001475	001477	001478	001479	001546
과세년월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세목명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세목코드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사 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트 시 エ	제 3 3 2	229			• • •	572	'		2015	. 11. 26
납세자 상세주소	(육노혁)	***호 (정안동)	() 아 * * * * * *	**B (묵정동, 묵정동 빌라)	() «Io *	(S원호) 호***	* *** * * * * * * * * * * * * * * * *	(왕표比) 호 *** 8 ***	(군자동)	*층 *호 (남대문로*가)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가김 **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가입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번안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반송사유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성명 /법인명	작0 각 각	고* 전	년 * ®	PAK ***TOR	게이에 * * 드주식화 사	안*울,안* 만	₩ * 0	아 - *	고* 산	K-l 요7
부과금액 (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
과세대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작소에 출입하는 행위
과세번호	001472	001506	001518	001520	001480	001481	001485	001502	001509	001450
과세년월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세 내명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세목코드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10-288706
뀌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상세주소	(암사동, 옛날보리밥)	(상대원동)	(군자동)
납세자 기본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번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길
반송사유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성명 /법인명	년 * 80	<u>수</u> 영	음 *
부과금액 (원)	20,000	50,000	50,000
과세대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과세번호	5-10 001526	001528	001548
과세년월	2015-10	2015-10	2015-10 001548
세무명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세목코드	33 10-288706	34 10-288706	10-288706
산	33	34	35



◈ 송파소방서공고 제2015-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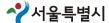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6일 송 파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	
(분 야)	등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번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제2015-02-00359호 (2015. 11. 18.)	㈜한성에스비씨 (110111-5862407)	김정란 1972.02.25.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28-22(방이동)	431 - 3833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0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장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번지 등 7필지

- 면 적 : 영구 6,853.4m², 일시 843.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차집관로 설치

- 내 역: 차집관로 1,370m, 관로 보수 1식

·BOX암거 1,239m (3.0m×3.0m L=656m, 2.0m×2.0m L=583m)

·원형관로 131m (D1,500mm×1열, D1,100mm×2열)

5. 점용기간(공사기간): 2015.11.17.~2020.11.16.(2015.11.17.~2015.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0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53(화곡6동 980-1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77번지 일원

<변경>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8-6번지

- 면 적 : <당초>3.84m² <변경>0.76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재해상황 전파용 방송스피커 설치

- 내 역:

당 초	변 경
- 방송스피커 5개소	- 방송스피커 1개소 (올림픽대로 확장에 따라 4개소 철거)

5. 점용기간 : <당초>2001.11.07.~2005.11.06. <변경>2005.11.07.~2020.11.0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1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68-7번지 등 5필지

(1168-7, 1168-8, 247-3, 247-4, 247-6, 247-8번지)

- 면 적: 1,322m²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기자재 운송을 위한 선착장 및 임시가도 설치

- 내 역 : 임시 선착장 및 도로 1식 5. 공사기간 : 2015.11.20.~2016.02.28.



기관의 장	고					
선	0					
람	람					